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(인)



2014년 10월 22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규칙 제 15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10일전”을 “15일전”으로 한다.

제48조 중 “사무국장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개정이유

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5일 더 앞당김으로써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심도 있는 입법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토록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15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함(제18조 제3항)
-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현재는 위원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개정함(제48조)